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장미경 의원 외 9명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(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장미경 ·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영길
 : 안주찬 · 양진오 · 이선우 · 이지연
 : 장세구 · 최경동
(10인)

1. 제안이유

사진 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, 사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(안 제3조 ~ 4조)
- 다. 사업 및 지원(안 제5조 ~ 6조)
- 라. 위탁(안 제7조)
- 마. 포상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3조, 제39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8.27.~9.3.)결과 의견 없음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사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진산업”이란 구미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·전시·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·개발·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수립) ① 시장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사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
2.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

3. 지역 사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,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지역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·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2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4조(문화산업의 육성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,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고보조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
2. 문화예술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
3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4.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

4. 작성자

-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김민욱(480-6602)